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및 배분 비율 상향〉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2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및 배분 비율 상향 (안 제23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6.

다.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공익배분 방식으로는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복권수입금 배분 금액이 불확실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및 배분 비율 상향 (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43</u> 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u><신 설></u>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u>문화예술진흥기금</u>
○ 복권수익금 공익사업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국가유공자 복지 - 소외계층 복지 및 다문화가족 지원 - <u>문화·예술 진흥사업</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복권수익금 공익사업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국가유공자 복지 - 소외계층 복지 및 다문화가족 지원 - <u><삭 제></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고, 나머지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6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 사업	11,430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2,598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예산처

개정안은 복권기금 공익사업 대상에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삭제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배분 대상이 증가(10개 → 11개)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43%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요(「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제16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의 조성(재원) (제17조)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공연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납입된 몰수 또는 추정금 6.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제8호에 따라 출연된 미분배 보상금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밑줄은 개정안에서 추가 예정	

구 분	내 용
기금의 용도 (제18조) ※ 밑줄은 개정안에서 추가 예정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10. 문화예술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11. 공연산업 진흥 및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43%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²⁾

「국가재정법」 제82조제1항³⁾에 따라 실시한 2023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의 위상,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필요성은 타당하며, 특히, 최근 기존의 문화예술 전통 장르가 파괴되면서 다양한 장르가 결합되고, 과학과 기술, 정보, IT 산업분야가 순수예술과 결합되는 경향도 강해지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 반하여, 동 기금의 수익구조가 상당히 열악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현재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법」 제23조제3항⁴⁾에 따라 지원받고는 있으나, 법정배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배분비율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재원 확보에 불확실성이 큰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명시하여 복권수익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경우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문예기금 고갈 위기, K컬처의 붕괴”(한국경제, 2024.11.22.)

3)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로, 202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공익사업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⁵⁾되는 금액이 2,808억 7,100만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법정배분비율을 8%p 상향하고 동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약 2,622억원이 배분될 예정이므로 지원 규모의 큰 변동 없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할 경우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남북·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증진 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보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임.

복권판매액 증가로 복권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배분기관·기금에 배분되는 금액도 점차 증가하여 2026년 계획 기준 1조 1,430억원임.

[2021년~2026년 복권기금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규모	71,941	76,412	78,729	84,354	90,948	95,863
법정배분	8,103	9,551	10,338	10,402	11,051	11,430
공익사업지원	17,972	19,949	20,109	20,801	21,742	22,598
여유자금운용	4,582	963	1,696	2,074	2,095	2,119
기타	41,284	45,949	46,586	51,077	56,060	59,716

주: 2021년~2025년은 결산 기준(2025년은 잠정), 2026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5) 세부사업명: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8918-898)

셋째, 현행과 같이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한 상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배분 비율을 43%로 8%p 상향함으로써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정 당시 기존 10개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를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으나,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⁶⁾이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추가되면서(10개 기관 → 11개 기관),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 또한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⁷⁾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다만, 복권법 제정 당시 법정배분기관이었던 ‘주택도시기금’이 2016년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
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
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
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
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
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
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진흥기
금을 법정배분기관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
며, 법정배분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총법정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
가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18호)이 발의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정배분제도 개편이 추진 중인 만큼, 새로운 법정배분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예산처도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며, 현재 법정배분기관 추가 관련 복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타 개정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을 복권기금 공익사업⁸⁾으로 지원 중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복권기금 공익사업 대상에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삭제할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소관 사업 외의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⁹⁾된 영

8) 2026년 공익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2,765억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금 44억원 등 총 2,809억원 지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화발전기금은 「복권법」에 따라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서 지원¹⁰⁾받아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정배분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대상에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삭제할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발전기금 등 타 기금 사업이나 향후 신규 도입될 수 있는 공익사업들이 복권수익금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됨. 이는 현재 수행 중인 관련 사업의 중단이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축소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에 따른 지원 공백 발생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을 설치한다.

10) 세부사업명: 영화발전기금 전출(8925-841)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단위: %, 억원)

복권수익금	35%	법정배분사업	<법정대상기관>		배분비율	'25 계획	'26 계획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12.583	1,374	1,150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0.371	920	948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310	617	60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56	826	833
			국 가 유 산 보 호 기 금		14.286	1,448	1,706
			지 방 자 치 단 체		17.267	1,906	2,062
			제 주 개 발 특 별 회 계		17.267	1,908	1,973
			사 회 복 지 공 동 모 금 회		4.286	474	474
			산 림 환 경 증 진 자 금		5.846	775	802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6.428	801	875
			< 소 계 >		100.0	11,051	11,430
기타수입	65%	공익사업	<공익사업 분야>		<사업수행기관>	'25 계획	'26 계획
			저소득 주거안정		주 택 도 시 기 금	4,500	4,000
			국가유공자 복지		보 훈 기 금	216	231
			저소득·소외계층		양 성 평 등 기 금	7,769	8,066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513	1,290
					기 후 대 응 기 금	1,076	1,069
					보 건 복 지 부	1,045	1,116
					금 융 위 원 회	1,964	3,500
					교 육 부	258	371
					법 무 부	22	28
			문화·예술진흥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2,677	2,809
					영 화 발 전 기 금	45	13
			재해·재난 구호		응 급 의 료 기 금	64	56
					행 정 안 전 부	50	50
			< 소 계 >			21,199	22,598
			< 총 계 >			32,251	34,028

※ 자료: 기획예산처

한편,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u>100분의 43</u> ----- ----- ----.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u>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 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 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③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문화·예술 진흥사업</u>	<u><삭제></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참고 1

현행 법정배분기관 현황

법정배분기관	배분비율 (35% 기준)	용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4.404%)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
2.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3.630%)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 -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3.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1.859%)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4.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356% (2.2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산업기반 조성
5.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5.000%)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
6. 지방자치단체	17.267% (6.043%)	- 지자체 문화·예술·복지 -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특별회계	17.267% (6.043%)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500%)	사회복지사업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846% (2.046%)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2.250%)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
계	100% (35%)	